

# 포상 내규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5.3.1.		16		
2	2006.7.1		17		
3	2009.6.1.		18		
4	2011.6.14.		19		
5	2012.4.12.		20		
6	2013.4.22.		21		
7	2014.7.28.		22		
8	2019.6.17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포상 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직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거 직원 및 교외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6.17>
- 제2조** (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6.17>

## 제 2 장 공적심사 위원회

- 제3조** (공적심사 위원회) ① 공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하는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개정2019.6.17>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전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 <2019.6.17>]
-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포상후보자의 공적과 포상내용을 심의 결정 한다
- [중전 제3조에서 제4조로 변경 <2019.6.17>]
- 제5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6.17>

## 제 3 장 포 상

- 제6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대상, 유공표창, 개교기념 공로표창, 공헌표창, 비행안전상장기근속상으로 구분한다.<개정2019.6.17>
- [중전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 <2019.6.17>]
- 제7조** (포상대상)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 1. 대상 : 본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직원에게 수여되는 대학 최고의 영예 표창
  - 2. 유공표창
    - 가. 대상 보다는 다소 공적이 미흡하나 탁월한 업무수행능력 및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실적이 현저한 직원.

나. 특수 Project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팀(단체) 또는 직원

3. 개교기념 공로표창 : 대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으로서 최근 3년 이내 표창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단위로 부서인원에 비례하여 선발

4. 공헌표창

가. 경비절감, 업무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직원

나. 행정(학생)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직원

다. 대학발전에 공적이 있는 팀(단체) 또는 직원

5. 비행안전상

가. 비행임무 중 항공기 결함을 사전에 발견, 신속한 조치로 안전착륙에 기여한 자

나. 항공기 주요 결함요인을 사전에 색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자.

다. 안전의식이 타의 모범이 되고 안전향상에 기여한 직원

6. 장기근속상 :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10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한 직원  
[전부개정 <2019.6.17>]

[중전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19.6.17>]

**제8조 (포상방법)** 포상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운영한다.

[중전 제10조에서 제8조로 변경 <2019.6.17>]

## 제 4 장 포상절차

**제9조 (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의 소속부서장 또는 팀장은 관련 자료를 동 사유 인지 후 1주일 이내에 사무처(총무팀)에 제출 한다.

<개정2019.6.17>

②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 <별표 1>과 <별표 2>를 작성하여 사무처(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6.17>

③ 비행안전상 대상자 선정은 비행교육원에서 정한 별도의 내규에 의거 심의, 포상 한다.<신설 2019.6.17>

**제10조 (포상자 선정)** 포상은 추천 대상자에 대한 관계서류 및 최근 근무평가 점수,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득함으로써 결정된다.

<개정2019.6.17>

[중전 제12조에서 제10조로 변경 <2019.6.17>]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개교기념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9.6.17>

[중전 제13조에서 제11조로 변경 <2019.6.17>]

**제12조 (주관부서)** 포상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총무팀)에서 주관한다.<신설 2019.6.17>

**제13조 (대의표창)** ① 산학협동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외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산학협동상 또는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개정2019.6.17>

② 심의는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개정2019.6.17>

[중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변경 <2019.6.17>]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포상하지 않는다.<신설 2019.6.17>

**제15조** (기록, 관리) 대학은 포상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직원의 제반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중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19.6.17>]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중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변경 <2019.6.17>]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 2019.6.17>

공 적 내 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소 속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정 2019.6.17>

### 부상 지급 기준

구 분		부 상 내 용	비 고
대 상		현금 100만원	
유공표창		현금 70만원	
개교기념 공로표창		현금 50만원	
공헌표창		현금 30만원	
장기근속상	10년	현금 50만원	
	20년	현금 80만원	
	25년	현금 100만원	
	30년	현금 130만원	
	35년	현금 150만원	
	40년	현금 200만원	
산학협동상		기념품(10만원 이내)	